



집중 점검 옥외광고업 등록제 실시

“자격증 범위 확대에 전문성 저하”



2006년의 끝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는 옥외광고계에 있어 뜻깊은 한해였다. 먼저 월드컵을 비롯해 각종 지방선거, 대기업·관공서를 중심으로 불었던 CI교체 사업 등으로 굵적굵직한 물량이 잇따라 쏟아졌다. 이와 함께 2006년 옥외광고 종사자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모아졌다. 많은 이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난 6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령이 옥외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초 입법예고와는 달리 기술능력 기준이 확대되면서 찬반 논란을 낳고 있다. 개정령의 세부내용 및 문제가 되고 있는 자격증 범위 확대 문제에 대해 알아봤다.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6월 24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령은 그동안 옥외광고가 무분별한 불법·불량 광고를 양산하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의 신고제 방식에서 일정한 사업장 규모와 자격증을 갖춘 경우에만 업을 영위할 수 있는 등록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고제는 특정 사업이나 활동의 개시와 그 내용에 대해 보고하면 정부기관은 이에 대해서 형식적인 심사권을 갖는 방식이다. 여기서 형식적인 심사권이란 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법에서 정한 대로 모두 다 적절히 구비되고 내용이 다 기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권을 말한다. 반면 등록제란 특정 사업이나 활동을 개시하는데 있어 일정한 등록 요건을 만들어 놓고 정부기관이 등록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권을 갖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시행령 개정안의 의미는 구체적 자격기준을 마련해 기존 사업자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신규사업자들에 대한 진입 문턱을 높여 포화상태에 있는 시장 상황을 조절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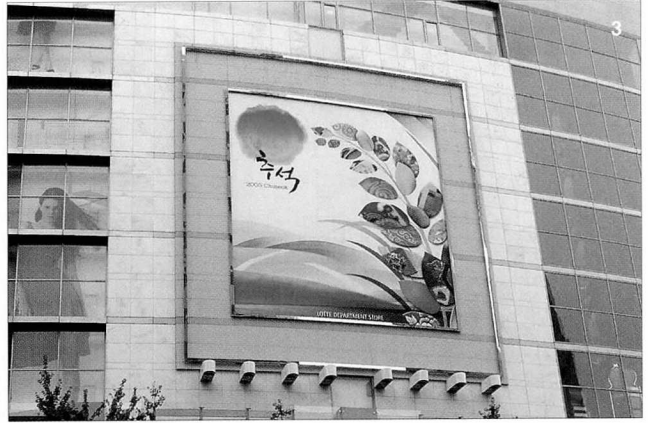
일정 사업장 규모와 자격증 갖춰야

신고제에서의 옥외광고업은 특별한 기술자격이나 시설이 없어도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상황이 변했다. 앞으로는 옥외광고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이상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자격증 소지자 수는 종업원 수가 5이하인 경우에는 1명, 6명에서 10명까지는 2명 등 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작업장도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옥외광고 대행업은 사무실 면적 6.6㎡이상(2평), 광고물 제작업은 작업장 면적을 9.9㎡(3평)이상 갖추어야 한다. 자격증이나 규정된 시설면적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개정안 시행 시점부터 1년 후인 2007년 6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자격증 범위, 어디까지가 적당한가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많은 업자들이 실망감을 나타냈다. 기술자격과 시설기준이 당초 기대와는 크게 빛나 갔기 때문이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자격을 갖추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은 광고도장기능사와 옥외광고사로 알려졌다. 광고도장기능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옥외광고사는 한국옥외광고협회가 각각 주관하고 있다. 옥외광고업이 등록제로 전환된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이들 자격증에 대한 응시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당연한 일.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기존 광고도장기능사와 옥외광고사로 정해졌던 자격증에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와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등 3가지 자격증이 추가되면서 혼선



이 빚어졌다. 기존 옥외광고업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옥외광고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다른 자격증까지 기술요건 대상에 포함되면서 애써 취득한 옥외광고사 및 광고도장기능사 자격증의 메리트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신고제 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등록제”라는 불멘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추가된 자격증의 경우 옥외광고물 제작과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과연 얼마나 수준 있는 옥외광고업자를 배출하고 불법광고물을 줄여 도시미관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그 효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질적 수준 향상에 도움될 것”이라는 의견도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지고 있다. 먼저 자격증 확대를 인정하는 쪽에서는 옥외광고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이 합쳐짐으로써 광고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충남 서산에서 간판제작을 하고 있는 업계종사자는 “등록제를 대비해 바쁜 시간을 쪼개어 옥외광고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나름대로 대비해 왔는데 솔직히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옥외광고사시험 실시 초기에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들로서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셈”이라고 아쉬하면서도 자격요건 기준 자체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또 “간판의 특성상 조명을 넣기 위해 전기배선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잘못된 경우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전기분야에 전문적 기술을 갖춘 인력도 옥외광고업계에 유입됨으로써 이런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컴퓨터그래픽운용기능사 또한 도시 미관이 강조되는 등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에 비춰볼 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문성 저하 우려로 반대 의견 많아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이같은 자격 완화가 오히려 3D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는 옥외광고업의 기반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같은 자격증을 따더라도 활용 분야가 다양한 컴퓨터 및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누가 옥외광고사 자격증에 도전하겠냐는 것. 문제는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옥외광고물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1~5 각종 옥외광고 활용사례



다. 서울 종로에서 옥외광고물 제작을 하는 업계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제작은 힘든 육체노동이면서도 공간 지각 능력을 요구하는 일인데 건축구조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컴퓨터그래픽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간판을 제대로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시했다. 전기관련 자격증에 대해서도 “간판에 형광등

같은 조명을 설치하는 이른바 ‘2차 작업’은 전기공사가기나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증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 업체와 분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 자격시험에는 옥외광고물 관리 법령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오히려 불법광고물을 양산해낼 소지가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대하는 업계관계자들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자격증을 포함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옥외광고사나 광고도장 기능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시험에 있어서도 옥외광고물 제작이 간판, 현수막, 래핑, 네온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률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시험과목을 세분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기술능력	시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이상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 비고 : 위 표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근무하는 자여야 한다.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

위반사항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등록취소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가. 무허가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변경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등록취소
나. 무신고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변경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15일 미만	영업정지 15일 이상 3월 이하	등록취소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등록취소
라. 금지 또는 제한지역·장소·물건에 표시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등록취소
마. 금지 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등록취소
바. 안전도검사에 불합격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등록취소
3. 이 법에 위반되는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때	영업정지 3월 미만	영업정지 3월 이상 6월 이하	등록취소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등록취소		